정책자료 2008-08-3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I

- 추정소득 부과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III

-축정소득 부과-

정책자료 2008-08-3

발 행 일 2008년 12월
저 자 이 태 진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록 제8-142호(94.7.1)
주 소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 화 02-380-8000(대표)
팩 스 02-352-9129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가 격 비매품
인 쇄 처 대명기획(02-2263-12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60-2 93330

편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목 차

I. 개요 ····· 1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 1
2. 사업의 개요: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 1
3. 자료의 개요 ····· 3

II. 주요 내용 및 결과 ····· 8
1. 주요 내용 ····· 8
2. 결과 ····· 13

I 개요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 설립목적

- 기초보장·자활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과 자활정책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기초보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

□ 사업내용

-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 및 빈곤통계 연보 발간
- 빈곤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

2. 사업의 개요: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가. 사업의 목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심층적 인터뷰, 자문, 토론을 위한 평가단 및 포럼을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뢰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함.

□ 이에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실무자와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기초보장제도 관련 중심의 업무수행 체계와 관련된 개선사항 도출, 모니터링 계획 및 실행결과 등을 논의

– 지속적인 현장실무자의 정책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 및 건전성 제고

나. 추진 방법 및 과정

□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심으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전문위원' 위촉

– 52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시도별 3~4인)을 선정하고 소속 지자체 평가에 가점 부여

–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의 특성

- 52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은 남성 19명, 여성 33명으로 구성
- 이중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9명,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3명임.
- 각각의 업무를 살펴보면, 18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4명은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인지역 13명, 경상지역 13명, 강원·충청지역 13명, 전라·제주지역 13명으로 구성됨.

– 정기적인 포럼 운영 및 Workshop 개최

- 제도 평가지표별 쟁점을 중심으로 포럼 개최 (분기별 1회)
- 시군구·읍면동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평가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기초보장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모니터링 연구수행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Workshop 개최를 통해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제안 (1회)

□ 모니터링 포럼의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 및 판정 이후 확인 및 점검(Ⅰ)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참여 및 탈수급 방안 모색, 부정수급 제재 방안(Ⅱ)
- 추정소득 부과 및 보육료 지원에 따른 행정처리 등 문제 진단, 해결 방안(Ⅲ)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별영향평가(Ⅳ)

다. 추진결과 및 활용

□ 기초보장평가센터와 현장실무자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된 모니터링 포럼의 성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발간

□ 시군구별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각 시군구별 통합조사팀 및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초보장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모니터링 연구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으로 활용

3. 자료의 개요

가. 자료작성 방법

□ 추정소득부과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개최

- 추정소득부과와 관련하여 총 33명의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관련 주제

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고,

-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나. 응답자 특성

□ 총 33명의 응답자의 지역은 수도권 지역 10명, 대도시 7명, 중소도시 8명, 농어촌 지역 8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 세부 지역 단위는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명,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 담당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는 20명,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는 13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사례 번호	지역	시군구/읍면동	업무
1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
2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
3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4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5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6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7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8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9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10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11	대도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12	대도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13	대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14	대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15	대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6	대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7	대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8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9	중소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20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21	중소도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22	중소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23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24	중소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25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26	농어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27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28	농어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29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30	농어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31	농어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32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33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다. 질문의 구성

□ 추정소득부과 실태와 부과기준

-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 수
- 주된 추정소득 부과 사유
- 추정소득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기준

□ 수급자 신고소득 신뢰여부

- 수급자가 신고하는 소득 신뢰여부
- 소득신고의 성실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 성공사례

□ 진단서 신뢰여부

- 추정소득 부과 단계에서 추정소득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나, 추정소득액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소명자료로 진단서를 제출 할 때, 진단서 신뢰여부
- 진단서를 제시할 경우 별도의 추가확인 여부

□ 갈등 및 조정사례

- 추정소득 부과시 지침에 따른 소명기회 제공 여부
- 이 과정의 갈등 및 조정사례

□ 차등보육료 지원 관련

-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는 전업주부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견해

라. 자료의 의의와 활용도

□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평가틀에는 담겨지기 어려운 제도시행 현장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의의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질적인 지평과 깊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 부과와 관련하여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질적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의 일선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급자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시행주체의 인식 및 태도가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II 주요 내용 및 결과

1. 주요 내용

□ 추정소득 부과 실태 및 적용기준

- 추정소득부과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2007년도 모니터링 평가보고서[1]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조사대상 공무원들도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추정에 의해 소득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크게 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지역별로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중 실제 추정소득 부과율은 대체로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리고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기준은 대체로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경미한 질환 등으로 근로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가구는 최저임금 기준 월 9일 이상 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근거로 부과
  - 그밖에 미취학하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조건불이행자, 소득활동 의심이 가는 자, 출입국 사실 있는 자, 진단기간 만료자, 대학생 중 아르바이트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과거 직업, 성별, 연령, 건강상태, 학력, 주변 신고, 상담 중 획득한 정보 등

1) 이태진 외,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을 고려하여 부과

□ 수급자 신고소득 신뢰여부

- 수급자의 신고소득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
  - 응답자 중 대부분 신뢰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하며, 이 들 중에서도 신뢰의 정도는 90%이상 신뢰, 70~80% 신뢰, 60~70% 신뢰 등으로 나타나 신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확하게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신뢰수준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상담, 지출실태서 작성 유도, 통장 입출금내역 확인, 부정수급 발견시 환수 또는 처벌사실 고지 등임.
  - 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상담과 지출실태조사임.
  - 그러나 이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실제 소득성실신고 유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현 제도에 따르면 성실신고자의 대다수가 급여중지나 책정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어서, 성실소득신고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진단서 신뢰여부

- 추정소득부과 단계에서 추정소득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혹은 추정소득액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소명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추정소득부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진단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이므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다

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진단서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의심이 가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도 함.
- 그러나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로 공무원이 파악하고 있는 실제와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나 진단서를 습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별도로 병원에 확인을 하거나 방문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단서를 보완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갈등 및 조정사례

- 지침상 추정소득 부과시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행하고 있다”와 “이행하고 있지 않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음.
  -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으며 소명기회 제공을 통해 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함.
  - 이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급자가 충분히 수긍을 하기 때문에 소명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경우와 소명을 하게 되면 추정소득 부과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이 됨.
  - 소명기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소명자료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이 없어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명기회의 취지가 살려지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기도 함.
- 추정소득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사례는 추정소득부과 사례가 많지 않

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지만 간혹 일어나는 경우도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수급자의 소명에 따라 추정소득을 조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수급자의 소명에 따라 추정소득부과 대상 일수 등을 조정
  - 수급자가 당초 밝히지 않았던 가구여건(가족 간병) 및 건강악화에 대한 정보가 소명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추정소득부과 제외 또는 조정

□ 차등보육료 지원 관련

- 일선 공무원들은 근로활동이 가능한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를 맡기는 동안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2008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는 전업주부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조처는 모든 근로능력자는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완전고용'이라는 상당히 지나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무리라는 입장과 일을 하는 모자가구의 가장이나 일반가구의 여성배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정소득부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음.
- 반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보육료 지원 가구에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보육료 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결국 생계급여를 깎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생계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육료 지원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
  - 주 대상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에게는 차등보육료 지원이 출산장려의 목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는 전업주부에 대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반이 아니라면 아이를 오후 5시에는 찾으러 가야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오후 5시 이전에 마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임.

- 보육료를 차등지급하기 위한 소득추정의 부정확성과 그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추정소득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
- 가사노동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실제 소득으로 파악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 찬성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에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급여가 된다는 입장
- 일반가구와 대부분의 모가 근로를 해야하는 모자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일반가구의 전업주부에게는 추정소득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 홑벌이부부 중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부가 일을 하는 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추정소득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들이 제시되었음.

-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더라도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에 따라 소득을 차등하여 추정하는 방법. 즉,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반(오후 2시까지), 오후반(오후 5시까지), 종일반(오후 7시 이후까지)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 종일반에 맡기는 경우보다 오전반에 맡기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을 낮게 산정하는 등의 방법
- 차등보육료지원 제도가 탄생한 배경에 주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관련되지 않도록 차등보육료지원 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함. 보육료지원을

소득파악을 전제로 차등지급할 것이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임.

- 보육료 지원 초기에는 아동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업주부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추정소득 적용을 보류하고 그 이후부터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제안

2. 결과

가. 추정소득부과 실태와 적용기준

9-1 / 사례	**-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주로 어떤 경우에 추정소득을 부과하시는지요? 그리고 추정소득 부과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나요?**
#18 중소도시, 시군구	- 가끔 있다. 주로 신규 수급자 책정시가 가정 많다. 공통 평균적으로 적용 (형평성 문제)
#20 중소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있는 경우는 현지조사 결과 본인들이 소득을 은폐하는 경우 설명하여 이해를 시킨 후 적용함.
#21 중소도시, 읍면동	- 13가구 -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 농어촌, 읍면동	- 추정소득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생활실태나 주변 민원발생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추정소득 부과함
#11 대도시, 읍면동	- 담당자 별로 상이함. 해당지자체별로 또는 지침에 의거 조율할 필요가 있음.

#27 농어촌, ^시군구	- 추정소득 적용률은 5% 이하, 미취업시 추정소득 적용
#3 수도권, ^시군구	- 전체 조사건수의 10%정도 -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자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경우 - 지침의 추정소득 부과 기준에 의함
#10 수도권, ^시군구	-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가구는 최저임금 기준 월 9일이상 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근거로 부과
#9 수도권, 읍면동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근로능력자나 진단서를 제출하였어도 만성질환이나 진료기관 내역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는 가구에게 추정소득 부과
#32 농어촌, ^시군구	- 새올행정시스템상 추정소득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소득 일일 30,160원/월9일을 기준으로 일일고용소득으로 부과함
#33 농어촌, ^시군구	- 추정소득을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생활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한 후, 조사표에 나온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상담합니다. -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민원인은 솔직히 이야기 해주고, 없다고 하는 분은 설득 후 절충을 합니다.
#24 중소도^시, ^시군구	- 수급 신청자의 4~5%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다고 상담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라 최저 임금 일일 30,16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건강상태나 연령에 따라 부과 일수가 다름
#31 농어촌, ^시군구	- 지역마다 지역적인 특성상 부과 사례가 다양할 것이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나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 부과 - 현저하게 낮은 근로소득 신고로 인하여 추정소득 적용. 지침대로 적용. - 또한 경미한 질환 등으로 근로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부과함.
#13 대도^시, ^시군구	- 조건 불이행(상담거부)시 추정소득 부과. - 최저임금 13일근로로 추정소득 부과
#6 ^시군구, 읍면동	- 신규조사시 근로가 불명할 경우이나, 화물차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용으로 사용중이나 추정소득 부과보다 낮게 소득신고를 할 경우 추정소득 부과

#16 대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 부과사례 : 7.5 ~ 8.5% - 가계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연령, 건강, 가구여건 감안시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 71-72』에 의거 추정소득 부과기준 적용
#7 시군구, 읍면동	- 미취학하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 월 생계지출 내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25 중소도시, 시군구	- 수급자 257가구 중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있는 세대는 3가구임. - 생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이전 조사시 보다 적게 소득신고하는 경우, 조건불이행의 경우 부과를 하였으며 부과기준에 따라 적용하려고 하나 주로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음.
#8 수도권, 읍면동	-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과결정은 생활비지출내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과 이웃들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14 대도시, 시군구	- 신규수급자 신청시 소득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생활실태에 비추어 추정소득 적용 - 과거 직업, 성별, 연령, 건강상태, 학력 고려
#23 중소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20% 미만이다. 대부분은 실제 근로종사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하다거나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부과와 생계급여중지결정의 절차를 거쳐 생계급여의 중지와 추정소득부과 일수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다. -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진 않으나 1일 최저임금기준으로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인 13일을 기준하여 부과하고 있다.
#1 수도권, 시군구	- 거의 없으나 추정소득을 부과함에 있어 대상자 가구의 경제규모를 확인하여 본인이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같은 직종의 임금과 근로규모를 감안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함
#17 대도시, 시군구	- 20~30%정도 부과하고 있으며, 지침에 의하여 부과함. - 생활형편으로 보아 분명히 소득이 있다고 보여지나 없다고 우길 경우 지침을 들어 추정소득을 부과함.
#5 수도권, 읍면동	- 많지는 않습니다. - 노동시간에 비해 너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건강한 경우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그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5 대도시, 시군구	- 신규수급자 신청시 소득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생활실태에 비추어 추정소득 적용 - 과거 직업, 성별, 연령, 건강상태, 학력 고려

#19 중소도시, 시군구	- 4급 이상의 장애나 근로능력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미약자의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 근로능력자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과를 거부하는 경우 및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며 근로능력자 중 추정소득부과자는 대략 10% 정도로 볼 수 있음.
#26 농어촌, 시군구	- 수급자의 약2%정도 - 지출실태조사서(본인작성)와 지침 71쪽 '추정소득 부과기준'으로 적용.
#12 대도시, 읍면동	-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정방문, 집에 전화 등을 하였을 경우 또는 통장님을 통하여 나누어주는 무료쓰레기봉투 받고 있는지를 통하여 소득활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정소득부과하고 있음.
#2 수도권, 시군구	- 근로능력자이나 실직 및 미취업자일 경우 추정소득 부과하며 부과여부 및 부과일수는 지침에 의거 실시함.
#4 수도권, 읍면동	- 전체 수급자 601가구 중 43가구에 대해 추정소득 부과 (약7.1%) - 부과사유 : 조건불이행자, 소득활동 의구심이 가는 자, 출입국 사실 있는 자, 진단기간 만료자, 대학생 중 아르바이트 하는 자 등) - 추정소득 부과 기준 : 지침 적용, 주변 신고, 상담 중 획득한 정보 등

나. 신고소득 신뢰여부

9-2 / 사례	**- 수급자가 신고하는 소득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 소득신고의 성실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18 중소도시, 시군구	- 50% 정도, 법적 제재 장치 설명, 성실한 사람들만이 자진 신고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
#20 중소도시, 시군구	-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하면서도 신고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재하는 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하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임.
#21 중소도시, 읍면동	- 출장확인하는 바 90%이상 신뢰 - 많은 상담이 필요

#30 농어촌, 읍면동	- 수급자의 소득신고는 생계비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는 소득신고금액을 낮게 하고 있음. 성실히 소득 신고하는 수급자를 만나는 게 손에 꼽을 정도임. - 소득신고의 성실성 유도를 위해 지출실태서를 작성하거나, 수급자가 자주 이용하는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해 생활실태 등을 확인함.
#11 대도시, 읍면동	- 수급자의 증빙되지 않은 소득신고는 의미가 없음. 그러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소득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급자로써의 혜택(교육급여, 의료급여)을 위해 조정을 하기도 함
#27 농어촌, 시군구	- 수급자 소득신고 신뢰도 50% ~60%. 대부분 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낮게 신고함 - 대부분 상담과 지출내역을 중심으로 소득신고의 성실성 유도
#3 수도권, 시군구	- 50% 신뢰하고 있으며 월평균 지출 및 수입내역 작성표를 기재
#10 수도권, 시군구	- 50%정도 신뢰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한뒤 서식 작성토록 함
#9 수도권, 읍면동	- 증거나 동일 업종의 관계가 문의, 대리운전이나 파출부의 겨우 인력시장 등 시세를 확인하여 적용함.
#32 농어촌, 시군구	- 소득신고서가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 월별지출신고서를 제출받아 소득 사항 파악
#33 농어촌, 시군구	- 월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 일용직분들이 소득은 거의 신뢰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어온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액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신고는 실제로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고 9-1과 같이 수급자의 경우는 생활실태조사표를 이용해서 소득신고의 성실성을 유도합니다.
#24 중소도시, 시군구	- 60~70% 정도 신뢰하고 있음. 본인의 성실한 소득신고를 위해 부정수급시 환수는 물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지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가구의 지출실태 조사표 또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 받음으로 해서 소득을 확인하고 있음 예) 가구의 총소득이 1인가구 20만원정도 번다고 신고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의 전기세 수도 보험금 납입내역, 월세 등의 금액을 확인하여 정확히 소득신고가 된것인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한 소득은 20만원이나 지출실태 조사표상으로 보면 월 4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가구임.

#31 **농어촌,** **^시군구**	- 거의 대부분 하향신고하므로 신뢰감은 전혀 없음. - 성실한 신고 유도를 위해 지출실태조사표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신고소득과 지출액을 비슷하게 기재하며, 같은 수급자끼리 정보를 공유하여 신고하므로 큰 의미가 없음. - 성실하게 신고하게 유도하면 대다수 세대는 수급자 유지가 어려울 것임.
#13 **대도^시,** **^시군구**	- 본인 신고의 70~80% 신뢰
#6 **^시군구,** **읍면동**	- 50% 정도만 신뢰
#16 **대도^시,** **^시군구**	- 현행제도는 성실히 신고하는 민원인(일용직,임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대다수가 불이익(급여중지, 책정제외 등)을 받고 있음. - 성실히 신고하는 민원인이 우대를 받는 인센티브제도(예: 소득보전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28 **농어촌,** **읍면동**	- 거의 인정하지 않음
#7 **^시군구,** **읍면동**	- 많은 수급자들이 분기별로 소득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때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소득확인을 하고 있음(오히려 소득을 적게 작성하기도 함)
#25 **중소도^시,** **^시군구**	- 기초보장 업무를 하면서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급자의 소득파악임. 대부분의 수급자가 임시·일용직으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에 따라 생계급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가 소득신고를 적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신고서 제출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득신고의 성실성을 유도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8 **수도권,** **읍면동**	- 수급자에 따라 다르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성실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 들이기도 하고 최저임금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적정선에 미달될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실 수 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14 **대도^시,** **^시군구**	- 없음
#23 **중소도^시,** **^시군구**	- 소득신고 대상자의 80% 이상을 불신한다. 생활실태나 생활비지출규모 등을 근거로 추가소득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달리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스스로 강한 축소신고의사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도적이거나 객관적인 대응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가끔은

	국세청에 소득파악 협조 요청하겠다는 협박(?)을 동원하기도 한다. -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없이 생활안정자금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소득신고 받은 경우는 있기도 하다.
#1 **수도권,** **^시군구**	- 국민연금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 또한 축소신고가 많기 때문에 신고 소득을 거의 신뢰하지 않음. - 일단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둠. 물론 모든 경우에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뢰가 생기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심.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호중지에 대해 안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함.
#17 **대도^l,** **^시군구**	- 30%정도만 신뢰함 따라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를 자료로 활용함. - 동종업종의 소득수준을 들어 성실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나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음
#5 **수도권,** **읍면동**	- 전국분 자산조회등의 방법에 대해 일용직등도 국세청등에서 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출실태조사표상의 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에대해 묻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확인원보다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조사하면 대부분정확하여 사업자들의 부정수급을 막은 적은 있습니다.
#15 **대도^l,** **^시군구**	- 수급자가 신고하는 소득의 신뢰도는 매우 낮음. - 없음
#19 **중소도^l,** **^시군구**	- 객관적인 전산자료 이외에 고용임금확인서나 개인자필 소득신고는 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80%정도 신뢰하며, 대부분은 본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보다 낮게 신고함 - 소득신고가 생계급여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신고할 때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물질적인 지원을 최대한 연계하고자 함 또는 미신고시 추후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보장비용 징수됨을 안내하여 드리나 그다지 설득력은 없음.
#26 **농어촌,** **^시군구**	- 양적으로 전체 수급자의 30%정도는 소득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소득을 숨기는 정도도 각각 다르겠지만 완전은닉(극히 일부겠지만)하는 경우, 비정기적인 소득활동으로 얻은 소액을 숨기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시 신청서의 유의사항과 처벌규정을 또박또박 읽어주고, 불시에 비정기적 조사 시 드러나면 모두 회수함을 사전에 인지시킨다. 하지만 성공 사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성공이라고 믿고 있는 그 금액도, 그 수급자 소득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12 대도시, 읍면동	- 처음에는 얼마를 벌고 있다고 말하다가도 생계비가 그만큼 적게 나간다고 하면 바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것을 보았을때 수급자가 신고하는 소득신고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2 수도권, 시군구	- 동종직종의 임금과 비교해 보면 80% 정도는 허위신고로 생각함.
#4 수도권, 읍면동	- 신고 소득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지 않음. - 상담시 일종의 유도성 질문을 통해 정보 획득 - 그외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인정

다. 진단서 신뢰 여부

9-3 사례	**- 추정소득 부과 단계에서 추정소득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나, 추정소득액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소명자료로 진단서를 제출 할 때, 일반적으로 이 진단서를 신뢰하시는지요? - 진단서를 제시할 경우 별도의 추가확인을 하시는지요?**
#18 중소도시, 시군구	- 의사의 진단서는 아직까지 전적으로 신뢰한다. 추가 확인 하지 않는다.
#20 중소도시, 시군구	- 현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을 판단하는데 진단서 제출로 판단을 하는 사례가 많아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해주는 편임.
#21 중소도시, 읍면동	- 진단서 및 출장확인을 항상 같이 함
#30 농어촌, 읍면동	- 진단서를 인정해주는 편임.
#11 대도시, 읍면동	- 종합병원은 신뢰하나 개인병원은 의사에 따라 가지각색임
#27 농어촌, 시군구	- 진단서를 인정해주는 편이며. 치료내용 및 치료기간등은 확인함

#3 수도권, ^시군구	- 진단서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인정 함.
#10 수도권, ^시군구	- 추정소득을 부과하였으나 실제 소득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함
#9 수도권, 읍면동	- 질병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진단서를 습관적으로 제출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등 근로여부 확인
#32 농어촌, ^시군구	- 진단서 종류 중 가장 많은 질환은 당뇨 및 고혈압으로 생각됨 - 진단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진단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음 - 치료 빈도 등을 추가확인
#33 농어촌, ^시군구	- 아쉽긴하지만, 민원들이 행정을 100% 신뢰하지 않듯이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제시 할 경우 문제 없는 내용이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24 중소도^시, ^시군구	- 진단서는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신뢰하고 있음.
#31 농어촌, ^시군구	- 병이 발병할 수도 있지만, 추정소득을 부과했을 정도면 경미한 정도의 질병이라, 진단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나 진단서대로 할 수밖에 없음. - 진단서 첨부 후 별도의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근로여부를 확인하는 지역도 있음. - 의문이 많이 될 경우에는 통원치료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기도 함.
#13 대도^시, ^시군구	- 진단서를 우선으로 함.
#6 ^시군구, 읍면동	- 진단서 상 상병 내용을 검토후 최종적으로 추정소득 부과 판단함
#16 대도^시, ^시군구	-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신뢰하고 있으나, 소견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근로능력유무 판단이 어려울 때 민원인과 함께 담당의사에게 직접 확인(주로 전화)하고 있음.
#22 중소도^시, ^시군구	- 진단서는 대체로 신뢰를 하나 혹여 진단서를 조작하고 오는 경우도 한번 있어서 좀 의심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확인을 합니다

#7 **^시군구,** **읍면동**	- 법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진단서 제출로 인해 별도의 추가확인을 할 수 없음..
#25 **중소도^시,** **^시군구**	- 관리하던 수급자 중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으나 있다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매분기 재확인이 필요할 것임.
#8 **수도권,** **읍면동**	- 신뢰합니다. 진단서상에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단 명백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4 **대도^시,** **^시군구**	- 진단서를 참고하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음.
#23 **중소도^시,** **^시군구**	- 신뢰하지는 않지만 의사와의 확인, 이웃 등을 통한 실태 확인 등을 통해 근로 하지 않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또는 낮게 신고된 소득을 인정하고 진단서를 근거서류로 확보 해 두기도 한다.
#1 **수도권,** **^시군구**	- 거의 신뢰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진료내역이나 담당 의사를 통해 추가확인을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지는 못함. - 진단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를 통해 처리하기는 하지만 알면서도 속는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음.
#17 **대도^시,** **^시군구**	- 진단서를 100%로 신뢰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방안이 없으므로 인정하고 아울러 병원에 유선을 통하여 추가 확인을 하고 있음.
#5 **수도권,** **읍면동**	- 대부분 인정합니다.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의사협회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을 뿐아니라 본인의 진단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심이 날 경우 의사와 통화도 하지만 거의 같은 대답입니다.
#15 **대도^시,** **^시군구**	- 진단서를 참고하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음.
#19 **중소도^시,** **^시군구**	- 진단서를 제출한다고해서 다 인정하지는 않음. 추정소득액을 하향하거나 제외할때에는 가정방문과 관련 서류를 더 수집하고 진단서의 치료기간동안 성실치료이행을 위해 약물영수증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함
#26 **농어촌,** **^시군구**	- 앞서 근로능력 판정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과 같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진단서를 신뢰 안할 수 없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뒷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에게 진료 소견을 가지고 추가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12 대도시, 읍면동	- 진단서에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이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확인은 하고 있지 않다.
#2 수도권, 시군구	- 질병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함.
#4 수도권, 읍면동	- 3-3 문항의 답과 일맥 상통함. - 즉, 진단서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으며, 진단서 제출시 병원 의사를 통해 확인은 하고 있으나 그 또한 신뢰는 가지 않는 상태임.

라. 갈등 및 조정 사례

9-4 / 사례	**- 지침상 추정소득 부과시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행하고 계신지요?**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 그리고 수급자의 소명에 따라 추정소득을 조정한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18 중소도시, 시군구	- 이행하고 있다. 일일노동 등은 평균 노동일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다른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 시 추정소득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21 중소도시, 읍면동	- 상담을 통해서 추정소득을 부과하므로 이의신청은 없음.
#30 농어촌, 읍면동	- 수급자의 경우 추정소득 부과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추정소득 부과 시는 수급자와 상담 후 부과하기 때문에 소명하는 경우는 없음.
#11 대도시, 읍면동	- 소명하고 있지 않음. 일방적 통보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안내
#27 농어촌, 시군구	- 수급자와 상담 후 부과하기 때문에 마찰은 거의 없으며 소명하는 경우는 없음.

#3 수도권, ^시군구	- 노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실태서를 작성하고 추정소득 부과할 것을 이해시켜 별다른 마찰은 없었음.
#10 수도권, ^시군구	- 적절한 부과라고 생각하며, 부정수급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최근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수급 또한 기초수급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32 농어촌, ^시군구	- 추정소득은 일일 30,160원/최소 9일 이상 추정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남녀 및 연령의 차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근로일수를 적용 - 상담시 마찰의 소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편임. - 추정소득에 미치지 못하다는 소명시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33 농어촌, ^시군구	- 추정소득 부과시 민원에게 고지합니다.
#24 중소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을 부과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31 농어촌, ^시군구	- 추정소득 부과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 진단서 제출을 근거로 추정소득 날짜 등을 조정하기도 함. - 상담 결과 분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소득 부과 후 생계급여가 감해질 경우 학원을 다닌다는 등 각종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는 대상자도 많으며, 수급자의 소명에 따라 추정소득 부과 날짜 등을 조정하기도 함.
#13 대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부과전 수급자와 사전 상담하고 있음.
#6 ^시군구, 읍면동	-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16 대도^시, ^시군구	- 현재 소명기회를 반드시 제공하고 있음. 민원인이 납득치 못하면 지침내용을 직접 확인시키고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음. - 現 수급자가 가구여건(딸의 사고로 간병중) 및 건강악화(우측하지골절상으로 입원중)에 대한 소명을 하여 추정소득 부과에서 제외하였음.
#7 ^시군구, 읍면동	- 현실적으로 소명기회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해도 추정소득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되어 소명을 제출하여도 대부분이 추정소득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소명자료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이 없어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큼.

#25 **중소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 부과시 수급자와 상담 후 소명기회 안내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추정소득 부과 사례가 적어서 그런지 그동안 마찰은 없었음. - 수급자의 소명에 따라 추정소득을 조정한 사례 없음.
#8 **수도권,** **읍면동**	- 소명기회는 상담을 통해 그 자리에서 주고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주면 마찰이 있기 쉬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상담을 통해 근거자료가 없기에 이와 같이 추정소득을 부과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14 **대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 부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마감. - 소명기회 제공할 경우 적용불가능.
#23 **중소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안내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일당을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몇일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100% 다 알리지는 않는다. -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금액이 추정소득으로 부과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이다. - 수급자의 소명에 따라 추정소득을 조정한 경우는 당초 밝히지 않았던 가구 여건(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의 진술을 확보하여 확인 후 조정하였다. ⇒근로능력이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조건부과를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소득신고를 통하여 3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였음. 소득이 낮은 사유에 대한 소명 없어 추정소득의 부과와 조건부수급자 결정을 통지 하였으나 최근 자녀의 정신과적인 증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취업 여건이 되지 못함을 호소하여 자녀의 정신과 치료계획을 잡고 조건부과를 제외하고 진단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토록 하였던 사례 있음.
#1 **수도권,** **시군구**	- 추정소득 부과 시 대상자에게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소명자료를 안내하고,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추정소득이 불가피함을 설명함. - 추정소득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 최근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장애진단을 통한 장애등급조정으로 추정소득을 조정함.
#17 **대도시,** **시군구**	- 이행하고 있음. -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 대부분이 소득불성실 신고자이므로 받아들이고 있음.
#5 **수도권,** **읍면동**	- 소명의 기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소득을 줄이는 행정행위에 대해 본인들이 납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아무 이유없이 자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며 또한 자활사업보다 소득이 없는 일에 참석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추정소득이 필요하다 봅니다.

#15 대도시, 시군구	- 추정소득 부과시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마감. - 소명기회 제공할 경우 적용불가능.
#19 중소도시, 시군구	- 대부분의 경우 근로중일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음. - 추정소득의 금액의 최저한에 해당하므로 큰 마찰이 일어난 적은 없음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추정소득 하향을 원할 경우 진단서의 내용과 그동안 사업장에서 일을 해온 경력 그리고 가정여건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음.
#26 농어촌, 시군구	- 수급자가 신청시 초기상담과 통합조사 상담시에는 지출실태조사를 통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을 수긍하여 급여액은 적지만 수급권이 주어지는 것에 수긍을 하지만, 막상 수급자가 되고 급여를 받고 나면, 소명을 하여 소득부과액을 줄이기 위해 읍면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실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대도시, 읍면동	- 실제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을 이행 했을 때는 민원인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지는 못할 것 같다.
#2 수도권, 시군구	- 진단서 등 증빙서류미제출로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사유가 아니면 추정소득 조정하지 않음.
#4 수도권, 읍면동	- 소명기회는 반드시 제공하고 있음. 그래야만 다소나마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 추정소득에 대하여 대부분의 수급자는 수긍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마찰은 본인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경우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임.

마. 차등보육료 지원 관련

9-5 / 사례	**-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는 전업주부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를 맡긴 동안 일할 수 있으니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논리로 매월 30여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의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데 대해 최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민원이 있었다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18 중소도시, 시군구	- 자녀 보육비 지원과 관련한 정부지원금은 소득 산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소득으로 산정하면 정부보육비 지원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는가? - 또한 출산 장려 지원과는 부합되기에 소득산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20 중소도시, 시군구	-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업무를 맡기전 2년 6개월동안 보육료 책정 업무를 하였으나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 편이다. 실질적으로 추정소득 부과 제외자의 경우도 보육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전산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제도의 문제점인 상황에 30여만원의 추정소득 부과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매년초가 되면 보육료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아이 어머니들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본인은 추정소득이 부과되는 것을 모르고 범위안의 소득을 소득신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추정소득으로 인해 2층지원을 받지 못하고 3층으로 책정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적용되는 것에 문제점을 이야기함. 결국 설명을 해주어 이해를 하고 돌아갔지만 얼마가지 않아 소득신고서의 소득을 줄어 재신청을 하여 2층으로 책정 확정 받음.
#21 중소도시, 읍면동	- 추정소득을 부과해야 함 - 이미 자녀의 보육비로 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바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이중 급여로 판단 됨.
#30 농어촌, 읍면동	- 주부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추정소득을 부과 하지 않을 경우 맞벌이 부부 아동이 보육료 혜택(거의 4,5층에 해당됨)이 전업주부 가구의 아동의 보육료 혜택(3~4층)이 더 클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봄
#11 대도시, 읍면동	- 모든 소득은 근로능력을 의미하므로 민원인에 대해 담당자의 언변술에 대해 민원을 좌우함
#27 농어촌, 시군구	- 주부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추정소득을 부과 하지 않을 경우 맞벌이 부부 아동이 보육료 혜택(거의 4,5층에 해당됨)이 전업주부 가구의 아동의 보육료 혜택(3~4층)이 더 클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봄
#10 수도권, 시군구	- 적절한 부과라고 생각하며, 부정수급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최근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수급 또한 기초수급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9 수도권, 읍면동	- 맞벌이 부부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직장의 경우 소득이 명확하나 일용직이나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가 불성실하여 상시근로자들이 불만이 많음. 또한 저소득 가정으로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면 지원을 받으니 본인 스스로 가구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32 **농어촌,** **^시군구**	- 추정소득 명목으로 소득을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추정소득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최소한의 소득은 부과해야 된다고 하면 순순히 받아들임 - 만약 내가 담당자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33 **농어촌,** **^시군구**	- 만5세 의무보육 아동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의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아를 맡길 경우는 정황상 추정소득을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영아를 맡기는 경우보다는 어머니가 일을 하려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충분히 사유를 설명하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 추정소득을 부과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금 보육료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모님에게 불필요한 보육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24 **중소도^l,** **^시군구**	- 추정소득은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음. 일예로 초등학생1명과 어린이집 1명 2명둔 모자가족과 일반세대에서 남편과 처, 아이2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앞의 모자가족의 경우 어린자녀를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맡기면서 본인은 근로활동에 종사하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반면 일반세대의 주부일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머지 시간동안 본인은 집안일을 한다고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전자의 모자가족일 경우 열심히 일하면 손해본단는 생각이 들것이고 본인도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
#31 **농어촌,** **^시군구**	- 보육료 지원제도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기도 하겠지만 맞벌이를 하여 빈곤 탈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됨. - 일하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됨. - 보육료 지원혜택이 매년 상향되는 만큼 그에 따른 소득조사도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근로능력자라면 추정소득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산조회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장 근로시 소득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기도 하며, 또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상태임에도 본인 부담금이 없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소위 공돈이기에 일부러 보육시설에 보내기도 함. 추정소득 미부과 대상자(질환자, 학교 또는 학원 재학생 등)는 본인의 소명자료를 통해 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정소득을 부과되어져야 한다고 봄. - 차라리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 보육료 차등 지원을 폐지하고 모든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한다면 출산 장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됨.
#13 **대도^l,** **^시군구**	- 추정소득이 매우 적다고 생각됨. - 실제 맞벌이 부부에게 더 유리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6 **^시군구,** **읍면동**	- 당연히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16 **대도^시,** **^시군구**	-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경우 오전반(2시종료), 오후반(5시종료), 종일반(저녁7시 이후 종료) 등으로 세분하여 추정소득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으로 종일반은 12일, 오후반은 9일, 오전반은 5일 이상으로 부과하며 이에 대한 전업주부의 납득이 없으면, 가계지출내역서에 의거 소득과 지출을 대조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음
#28 **농어촌,** **읍면동**	- 어린이집에 맡기지만 어린이집은 4시경까지 보육을 해주고 있으므로, 취업가능한 시간이 4시까지로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만 가능하데 그러한 직장은 많이 없어 실질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시군구,** **읍면동**	- 힘들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워킹맘들은 소득발생으로 인해 보육료기준에 초과하거나 지원을 적게 받는 반면, 전업주부가정의 경우 자녀들을 정부지원 받아 시설에 보낼 경우에 추정소득이라도 부과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듯 합니다. -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양육이 단지 힘이 들어 정부보조를 받으니 적은 비용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킹맘의 경우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여집니다. 그러니 추정소득부과는 필요하다 봅니다.
#25 **중소도^시,** **^시군구**	- 차등보육료 지원의 경우 해마다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출산장려의 차원에서 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물론 일을 하기 위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의 정확한 신고나 재조사를 하지 않는 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추정소득 이상의 소득을 벌 수도 있고 그 이하의 소득을 벌 수도 있어 어느 쪽에서든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실제로 모가 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음. 담당자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료 신청자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 이로 인한 민원발생은 이중고를 겪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됨.
#8 **수도권,** **읍면동**	- 추정소득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4 **대도^시,** **^시군구**	- 보육료 초기 지원단계(2~3개월 정도)는 아동적응기간을 두어 추정소득 적용보류 - 그 이후부터 추정소득 적용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23 **중소도^l,** **^l군구**	- 오히려 추정소득의 부과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수에 최저임금만을 적용하여도 그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도 다 쉽지만은 않은 여건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추정소득 부과대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낮은 등급의 차등보육료를 받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본다. 보육료 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정 된 대상을 상대로 한다면 추정소득의 부과는 당연하다.
#1 **수도권,** **^l군구**	- 보육료 신청 시 취업을 하고자 보육을 원한다던 전업주부들이 사실상 취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본인은 '소득 없음'으로 보육료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또한 사실이며 수급자와 달리 보육료지원대상자는 업무 여건상 수시조사를 할 수 없는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어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목격한 바도 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임. - 정부가 보육아동전체에게 보육료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나마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주기위해 차등지원이라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취업을 해서 드러난 소득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초기 신청시는 구직을 위한 준비단계라 생각하고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연도에도 보육료지원을 신청할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17 **대도^l,** **^l군구**	- 수급자 선정상에 있어서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하여 조건부과 또는 추정소득 부과가 타당함. - 관련 민원사례 없었음.
#5 **수도권,** **읍면동**	- 보육료를 지원 받는 대상들이 실제적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속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특히 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맞벌이 부부와 형평성을 생각하면 추정소득 부과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15 **대도^l,** **^l군구**	- 보육료 초기 지원단계(2~3개월 정도)는 아동적응기간을 두어 추정소득 적용보류. - 그 이후부터 추정소득 적용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19 **중소도^l,** **^l군구**	- 현행 추정소득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수준의 금액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또한 정부지원의 입장이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여 방만한 생활을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봄. - 주부들과 상담을 하면서 추정소득부과 대상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해당금액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음

#26 농어촌, 시군구	- 법정 1층을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질문인지? - 1층을 제외한 다른 차등보육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보육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 관심 갖지 않았지만,) - 보육혜택을 주는 이유가 서민안정과 출산장려 등의 효과를 위해서라는 측면을 볼 때, 아이를 맡긴 후 소득을 부과하고 그로인해 지원 층이 낮아져 지원을 적게 받거나 중지되는 경우라면,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전 대통령의 발언을 되새겨 볼 때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 예를 들어, 2월에는 소득이 5층 기준 이하였다가, 3월 어린이집 입소와 함께 임시직 취직으로 월 소득이 발생, 3개월 평균소득이 기준 초과하여 6월에는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보육업무를 맡지 않아서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답변을 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12 대도시, 읍면동	- 민원말대로 진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에 대하여 억울하겠지만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목격) 전산에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추정소득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민원인에게 추정소득내용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수긍하는 입장임.
#2 수도권, 시군구	-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초과로 보육료도 지원받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 전업주부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음은 물론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하고 있음. 결국 취업주부의 경제활동 기여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정소득부과가 필요함. 요즈음 젊은 엄마들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아야 하는 저소득 가구일 경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암암리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 한 예로 큰 아이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작은 아이는 보육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4 수도권, 읍면동	-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는 판단은 하고 있으나 적정한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오히려 해당 가구의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순한 규정이나 소득신고자들의 허위 소득 신고를 막을수 있는 방법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